

# 뉴욕시의 아동보호제도

## 아동, 부모의 전유물 아닌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

| 글: 윤성민 뉴욕/뉴저지 한인소셜워커협회 회장  
퀸츠차일드 가이드센터 아시안 클리닉  
정신상담사회복지사

뉴욕시에서는 지난 2005년 한 해만도 50,309건의 신고가 접수될 정도로 아동학대 및 방임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도 대표적 이민자 사회인 뉴욕시의 특성상 미국의 아동양육방법과 보호제도에 익숙지 않은 이민자들에 의해 발생하는 아동학대 및 방임 사건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뉴욕시 한인사회에서 심각한 학대나 방임이 발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하지만 한국적 양육문화와 양육방식에 익숙한 한인들이 말을 안 듣거나 공부하지 않는다고 소위 '사랑의 매'를 들었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되거나 12세 이하의 미성년 아동을 집에 혼자 방치했다가 아동방임으로 신고되어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뉴욕시에서는 이러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아동국(Administration for Children's Services) 산하에 아동학대 핫라인을 설치하여 24시간 학대신고전화를 접수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사, 교사, 경찰관, 물리치료사, 간호사, 상담가, 의사 등 아동을 많이 대하는 전문직업인인 경우에는 학대가 의심될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아동보호조사전문가가 신고된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게 되고 학대나 방임이 확인되면 아동을 임시위탁가정 혹은 집단시설로 보내 보호받도록 조치하고 있다. 그리고 가해 부모에게는 상담전문가로부터 자녀양육기술에 관한 상담 및 교육을 받도록 명령한다. 한편, 사안이 경미하지만 향후 아동학대가 일어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아이들을 포스터 홈으로 데려가는 대신 해당 부모들에게 상담과 사례관리 등의 예방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 위탁보호서비스(Foster Care): 위에서 언급했듯이 아동학대가 발생되면 아동보호조사전문가가 파견되어 학대 혹은 방임 여부를 조사한 후 아동이 그 가정에 거주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 뉴욕시 퀸즈에 위치한 Salvation Army 지부 건물. 뉴욕시 아동국과 계약을 맺은 기관으로 위탁양육가정(포스터홈)들을 운영하고, 부모상담 및 사례관리를 담당한다.



▲ 뉴욕시 아동국 퀸즈지역 지부사무실. 아동국은 아동학대나 방임 신고가 들어왔을 때 직원들을 파견하여 조사하고 가정법원과 연계하여 부모양육권의 일시정지, 피해아동의 위탁가정 배치, 계약기관 관리 및 운영지도, 가족결함 및 입양 등을 결정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피해아동을 위탁가정에 보낸다. 뉴욕시에는 아동국 및 60 여 개 정도의 비영리기관이 위탁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5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18,968명의 아동들이 위탁보호서비스를 받고 있다. 위탁보호서비스를 받는 아동들은 기숙사, 그룹홈, 그룹거주시설 등의 집단위탁시설, 포스터케어 자격을 취득한 위탁가정, 혹은 아동의 친척집으로 보내진다. 특히 한인들 경우에는 자격을 취득한 한인위탁가정이 턱없이 부족하고 아동을 돌볼 친척들이 없어서 대개는 타민족 위탁가정에 보내지는 경우가 많다. 한편 위탁보호서비스는 위와 같이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가정법원 판사의 명령으로 피해아동에게 제공되기도 하지만, 부모가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자발적으로 요청하여 이루어지기도 한다. 뉴욕시 아동국 담당자와 계약기관의 케이스 워커는 아동이 위탁가정에 거주하고 있는 동안 부모들에게 상담을 받도록 주선하고 지속적인 가정방문과 사례회의를 하게 되며 친부모에게 돌려보내야 할지 아니면 영구입양을 주선해야 할지를 심사하며 그 결정은 가정법원 판사가 내리게 된다.

○ 예방서비스(Preventive Services): 아동국은 서비스 계약기관을 통하여 향후 아동학대나 방임이 발생할 소지가 높다고 판단되는 가정에게 상담, 개인 및 집단 개입서비스, 사례관리, 생활 및 주택 지원서비스(Home Making/Housing Subsidy) 등을 제공하여 미리 그사건의 발생을 예방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 가정지원서비스(Family Home Care): 아동의 부모가 병이 걸렸거나, 부모가 질병에 걸린 가족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아동을 제대로 돌볼 수 없는 경우, 또는 입원 등과 같은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아동을 돌보는 것이 전혀 불가능할 경우에 가정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담당의사로부터 부모가 아동을 돌볼 수 없어서 가정지원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확인사인을 받아서 신청서를 아동국에 제출하면 된다. 이 서비스를 받게 되면 가정보호원이 파견되어 아동양육과 관련된 교육과 청소, 음식 만들기, 옷 입히기, 씻기기, 장보기 등의 도움을 제공한다.

○ 주택지원서비스(Housing Services): 부모가 좋지 않은 주거환경 때문에 아동과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지내야 하거나, 부득이 위탁가정(Foster Home)에 아동을 보내야 하는 경우에 뉴욕시 주택국과 연계하여 그 가정에 주택전표 (Section 8 Voucher)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으



▲ 대표적인 다민족 밀집지역인 뉴욕시 퀸즈 자메이카의 거리 모습.



▲ 뉴욕시 퀸즈에 위치한 Safe Horizon 건물. 뉴욕시 아동국과 계약을 맺은 기관으로 위탁양육가정(포스터홈)들을 운영하고, 부모상담 및 사례관리를 담당한다.



▲ 뉴욕시 퀸즈에 위치한 SCO Family Services Center 건물. 뉴욕시 아동국과 계약을 맺은 기관으로 위탁양육가정(포스터홈)들을 운영하고, 부모상담 및 사례관리를 담당한다.

“뉴욕시에서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아동국(Administration for Children's Services) 산하에 아동학대 핫라인을 설치하여 24시간 학대신고전화를 접수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사, 교사, 경찰관, 물리치료사, 간호사, 상담가, 의사 등 아동을 많이 대하는 전문직업인인 경우에는 학대가 의심될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 뉴욕시 퀸즈 가정법원 건물. 아동학대와 관련된 재판이 이루어 지는 곳이다. 종종 아동국 산하의 검사와 부모측 변호사가 아동의 양육권리를 놓고 열띤 공방이 벌어지기도 한다.



▲ 아동학대로 기소된 한 부모가 재판을 받기 위해 가정법원 건물로 들어가고 있다.

며, 해당되는 가정은 가구소득의 30%만 월세로 지불하고 나머지 부족한 월세는 주택전표가 대신 지불해 준다.

○ 청소년계발 서비스(Youth Development): 위탁가정(Foster Home)에서 지내다가 친부모에게 돌아가지도 않고 영구 입양도 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건강하고 생산적인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이다. 이 청소년들에게는 멘토링(Mentoring Service)을 통해 미래를 이끌어주고 상담해 줄 수 있는 성인을 연결시켜주고, 대학입학과 직업기술을 터득할 수 있는 제반 지원서비스를 제공해준다.

○ 입양제도 (Adoption): 아동이 위탁가정에서 머무르는 것은 임시적인 조치이다. 만약 18개월에서 22개월 동안에 부모가 제대로 협조하지 않거나 상담과 교육을 성공적으로 이수하지 않는 경우, 또한 아동이 집으로 돌려보내질 경우 심각한 위협에 처할 수 있거나, 부모가 감옥에 가든지 마약중독 등의 문제로 자녀를 돌볼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을 입양되도록 추진한다. 이 때 친부모가 법정소송을 벌일 수도 있으나 그 궁극적인 결정은 가정법원 판사가 '아동의 최선의 이익' 을 고려하여 결정을 내리게 된다.

위에 설명한 것들은 주로 뉴욕시 아동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프로그램이다. 미국에 살면서 또 사회복지사로서 아동전문 정신클리닉에 일하면서 느끼는 것은 미국에서는 아동이 부모의 소유 혹은 전유물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서는 부모의 양육권도 박탈할 정도로 아주 엄격한 보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아동이 부모나 친척의 도움 없이도 또한 열악한 가정환경에서도 건강하게 자라 독립된 성인으로 자라날 수 있는 각종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